

심 사 보 고 서

【도시관리계획(시설 근린공원) 결정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34

2026. 10. 12.
도시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 8. 31. / 남양주시장
- 나. 회부일자: 2026. 10. 7.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6. 10. 08.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남양주 왕숙1·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이 일부 해제됨에 따라 훼손지복구계획의 일환으로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안) 입안(4개소) 제안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나. 주요내용

- 사업개요

구 분	대 상 지	위 치	복구면적(㎡)
왕숙지구 (3개소)	용암천(가칭)	별내면 광전리 일원	110,689
	왕숙 서측(가칭)	진접읍 내곡리 일원	174,256
	진건(가칭)	진건읍, 금곡동 일원	836,195
왕숙2지구	수석(가칭)	삼패동, 이패동, 수석동 일원	315,790
계			1,436,930

○ 주요 입안 내용

- 제 안 자: 남양주시장(미래도시과)
-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00	용암천 (가칭)	근린 공원	별내면 광전리 95-1번지 일원	110,689	-	-
신설	00	왕숙 서측 (가칭)	근린 공원	진접읍 내곡리 575-3번지 일원	174,256		
신설	00	진건 (가칭)	근린 공원	진건읍 사능리 504-5번지 일원	836,195		
신설	00	수석 (가칭)	근린 공원	경기도 남양주시 이패동 446번지 일원	315,790		

-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00	용암천 (가칭)	· 근린공원 신설 - A=110,689㎡	·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이 일부 해제됨에 따라 훼손지 복구계획 일환으로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00	왕숙 서측 (가칭)	· 근린공원 신설 - A=174,256㎡	
00	진건 (가칭)	· 근린공원 신설 - A=836,195㎡	
00	수석 (가칭)	· 근린공원 신설 - A=315,790㎡	

○ 추진현황

- 2024. 8. :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00호) 결정(안) 입안 요청

- 2025. 1. : 주민공람·공고
- 2025. 1. ~ 2026. 8. : 관련부서(기관) 협의

○ 향후 추진계획

- 2026. 10.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6. 11.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027. :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인가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서진원)

- 본 의견 청취안은 왕숙1·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개발제한 구역이 일부 해제됨에 따라 남은 개발제한구역 안의 건축물, 공작물 설치 등으로 이미 녹지 기능을 상실한 훼손지를 근린공원으로 시설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 주요 내용은 왕숙지구 3개소와 왕숙 2지구의 1개소 총 1,436,930㎡로서 왕숙, 왕숙2지구 신도시 GB해제 면적 9,821,769.5㎡ 대비 14.6%를 훼손지 복구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복구의무 면적을 정한 국토교통부 훈령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5조의 2에 따라 해제 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 포함되어 법적 기준에 부합하며, 시행사인 LH가 (가칭) 진건과 수석을 GH가 용암천과 왕숙 서측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훼손지 복구사업의 원칙이 훼손된 지역의 녹지로서의 기능을 회복·증진시키고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향후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체육시설과 휴양, 편의시설물을 법령에서 정한 최대 물량¹⁾을 확보

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하여 시민의 여가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면밀한 행정의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질의·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 음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35

2026. 10. 12.
도시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 8. 31. / 남양주시장
- 나. 회부일자: 2026. 10. 7.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6. 10. 08.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주차장법」 개정(‘25.12.02. 개정, ‘26.06.03. 시행)으로 부설주차장의 주차 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 비율을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위임근거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시 조례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 비율 조항 삭제(안 제20조제2항)
 - 「주차장법」 개정사항 반영
- 별표·별지 서식 내 조례 인용조항 현행화(별표1의2 및 6,7,8, 별지 제1호)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서진원)

- 본 조례안은 2025년 12월 2일 개정 시행(' 26.6.3.)된 「주차장법」 제19조의5 제2항 제3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기계식 주차장치의 비율’ 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인 제20조 제2항을 삭제하고 별표 제목의 근거 조문의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 최근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와 자주식 주차장에 비해 공간 이용의 효율성과 경제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기계식 주차장의 주차규모를 30%이하로 제한 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합리적인 조치라 여겨집니다.

4. 질의·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 음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6

2026. 10. 12.

도시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 8. 31. / 남양주시장

나. 회부일자: 2026. 10. 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6. 10. 08.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도 전자서명동의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의서 징구의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정비사업 관련 계획 수립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련 부서 간 이견, 협의 지연 등에 따라 협의를 필요한 사항을 신속히 조정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실무협의기구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비계획의 입안요청과 입안제안 시 전자서명동의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본인확인 방법 등 세부사항은 상위법령의 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의2, 안 제10조)

- 정비사업 실무협의기구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70조~제72조)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에도 실무협의기구의 협의·조정을 거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안 부칙)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서진원)

- 본 조례안은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동의 절차에 전자서명동의서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동의서 징구의 편의성과 절차적 명확성을 높이고, 사업추진과정에서 관계 부서 간 협의회가 장기화에 따른 사업 지연과 민원 발생의 원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관계 부서 간 협의·조정을 위한 실무협의기구를 도입하여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특히, 실무 협의 대상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뿐 아니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 사항까지 포함하고, 관련 조례에도 연계 규정을 신설한 것은 유사한 도시정비사업 전반에 통일적인 협의체계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등 개정의 필요성과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안 제72조제6항에서 실무협의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회의결과 관리 및 이행점검 절차 등의 구체화와 안전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사전 배포 등 세부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 음

심 사 보 고 서

【화도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 청취안】

의안번호

37

2026. 10. 15.

도시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 8. 31. / 남양주시장

나. 회부일자: 2026. 10. 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6. 10. 8.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화도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화도읍 마석우리 일원의 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2019. 11. 수립하여 추진해온 뉴딜사업의 실행계획으로 사업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변경사항 및 사업 일정 등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반영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위 치 : 화도읍 마석우리 292-2번지 일원 $A=211,625m^2$
- 사업기간 : 2019년 ~ 2026년
- 총사업비 : 438.09억원
 - 마중물 사업 : 366억원(국비 150, 도비 30, 시비 150, 기금 36)
 - 지자체 사업 : 65.39억원 / 부처연계사업 : 6.7억원
- 주요 변경 사항
 - 맷돌모루 플랫폼 조성

- 사업기간 연장('26→'28년)
- 규모 변경에 따른 추가 사업비 반영(증 187.75억)
- 생활SOC공모사업
 - 사업기간 연장('26→'28년)
- 지역상권 활성화
 - 사업내용 변경(복합문화센터 규모 확대, 게스트하우스 삭제)
- 스마트복합주차타워
 - 사업기간 연장('26→'27년)
 - 규모 변경에 따른 추가 사업비 반영(증89.43억)
- 변경 전/후 비교표

(단위: 억 원)

구 분	단위 · 세부사업		사 업 비			변경 내용
			당 초	변경(안)	증 감	
합 계			438.09	715.27	증 277.18	-
마중물 사 업	공간을 창조하는 화도	맷돌모루 문화예술 거리 조성	36.00	36.00	-	-
		맷돌모루 플랫폼	159.00	159.00	-	(당초)지하1층,지상3층 → (변경)지하2층,지상6층 규모 확대 및 공기 확보를 위한 사업기간 연장('26→'28)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13.80	13.80	-	-
		마석공원 및 마석우천 경관리뉴얼사업	24.50	24.50	-	-
		스마트복합주차타워	100.30	100.30	-	공기 확보를 위한 사업기간 연장 ('26→'27)
	어울려 사는 화도	맷돌모루 플랫폼 활성화	5.10	5.10	-	-
	찾아오는 화도	지역상권 활성화	27.30	27.30	-	게스트하우스 조성계획 삭제 (당초 맷돌모루 플랫폼 1층에 조성 예정), 공기 확보를 위한 사업기간 연장('26→'28)
	소 계		366.00	366.00	-	-
지자체 사 업	생활SOC공모사업 (나무도서관, 생활문화센터)		17.52	17.52	-	맷돌모루 플랫폼 공사지연에 따라 사업기간 연장 ('26→'28)
	스마트 복합주차타워		47.87	137.30	증 89.43	스마트 복합주차타워 추가 사업비 반영 및 공기 확보를 위한 사업기간 연장 ('26→'27)
	맷돌모루 플랫폼 조성		-	187.75	증 187.75	맷돌모루 플랫폼 추가 사업비 반영 및 공기 확보를 위한 사업기간 연장('26→'28)
	소 계		65.39	342.57	증 277.18	-
부 연 사 업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6.70	6.70	-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서진원)

- 본 의견 청취안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변경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 국·도비 매칭 마중물 사업인 **맷돌모루 플랫폼 사업**을 지자체사업으로 187억 7,5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이는 당초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를 지하 2층에서 지상 6층으로 확장하면서 발생한 비용이며 청년창업 스터디카페와 영유아 체험문화시설의 신설과 기존에 계획된 시설의 적정성을 검토하면서 면적이 증가된 것으로 파악되며 사업기간도 당초 2026년도에서 2028년까지 연장(*스마트복합주차타워 2027년 준공)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 이처럼 건축 연면적 증가 등으로 인해 매칭사업이 아닌 순수 자체사업비로 277억원이 증액되는 만큼 원도심 내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과 지속적인 방문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집객시설의 배치가 필요하며, 당초 사업비 대비 30%이상 증액되면 투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재심사 받아야 하나 본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재심사 제외 사유에 해당하며 2026년 7월 20일에 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결과보고서는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지연된 만큼 조속한 준공이 필요할 것입니다.

4. 질의·답변요지 :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38

2026. 10. 15.

도시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 8. 31. / 남양주시장

나. 회부일자: 2026. 10. 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6. 10. 12.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돗물의 수질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자문 기능을 강화하여 수돗물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서진원)

○ 본 조례안은 「수도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3에 따라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와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취지 및 위원회 구성·운영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특히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에 따라 소위원회 형태로 운영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별도 조례에 근거한 독립 법정위원회로 정비하는 것은 행정편의를 벗어나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조치라 여겨지며, 위 조례에는 2026년 5월 전부 개정되어 부칙에 소위원회 구성과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만 있을 뿐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금번 안건으로 제출되어 약 4개월 이상 조례의 부재를 불러온 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질의·답변요지 :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